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3
----------	--------

제출년월일 : 2020. 1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A형간염’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예방접종 및 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에 장애인 급수에 따른 무료대상자 표기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A형간염’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예방접종 및 검사 항목추가와 그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별표)
-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구분 중 ‘2. 유료접종’의 ‘가. B형간염’에서 ‘가. 간염’으로 개정하여 ‘A형간염’까지 접종 범위 확대
 -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구분 중 ‘3. 검사’의 ‘나. A형간염검사’항목 추가
- 나.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 장애인 표기 변경(안 별표)
-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구분 중 ‘3. 검사’ 비고란의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및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9. 3. ~ 9. 23.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제1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10.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 관련)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나. 건강진단서	1통	1,500원	
	다. 사체검안서	1통	5,000원	
	라. 사망진단서	1통	500원	
	마.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통	500원	
	바. 방사선필름사본교부	CD 1장	3,000원	
	사. 그 밖에 사실 공부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	1통	300원	
	아. 기존 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원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2. 유료접종	가. 간염	1/0.5ml	1)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u>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 중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u>	
	나. 장티푸스	0.5ml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받은 병·의원의 접종 수료는 약품공급가격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 중 생물학적 제제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u>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 산정은 1)의 단서를 준용한다.</u>	
	다. 신증후군 출혈열	도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받은 병·의원의 유료접종 약품공급 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u>다만, 매회 공급총액의 100원 미만의 금액 산정은 1)의 단서를 준용한다.</u>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3. 검사	가. B형간염검사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중 보건소 외래 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액	
	<u>나. A형간염검사</u>	<u>1회</u>	<u>16,000원</u>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u>다. 콜밀도검사</u>	1회	6,000원	무료대상자 ·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인 사람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u>라. 암표지자검사</u> (간암,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1항목	7,000원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u>마. 갑상선기능검사</u> (T3, FT4, TSH)	1회	15,000원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u>바. 국민건강검진</u>	1회	7,500원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u>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 관련)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 관련)							
구 분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구 분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2. 유료접종	가. B형간염	1/0.5ml	가.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내의 경우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내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병·의원의 접종수가료는 약품공급가격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 중 생물학적 제제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전항에 의한 지정병·의원의 유료접종 약품공급 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매회 공급총액의 10자리 이하 금액의 산정은 가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유료접종	가. 간염	1/0.5ml	1)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 중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병·의원의 접종수가료는 약품공급가격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 중 생물학적 제제주사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0원 미만의 금액 산정은 1)의 단서를 준용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병·의원의 유료접종 약품공급 가격은 구입가격으로 하며 1회용 주사기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매회 공급총액의 100원 미만의 금액 산정은 1)의 단서를 준용한다.				
	나. 장티푸스	0.5ml				나. 장티푸스	0.5ml					
	다. 신중후군 출혈열	도스				다. 신중후군 출혈열	도스					
3. 검사	가. B형간염검사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중 보건소 외래 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액	무료대상자 · 관내거주 만 65세 이상인 사람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급 장애인	3. 검사	가. B형간염검사	1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중 보건소 외래 진료비 1회 방문당 수가액				
	나. 콜빌도검사	1회				6,000원	나. A형간염검사			1회	16,000원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알표지자검사(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1항목				7,000원	다. 콜빌도검사			1회	6,000원	무료대상자 ·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인 사람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갑상선기능검사 (T3, FT4, TSH)	1회				15,000원	라. 알표지자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1항목	7,000원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마. 구빈건강검진	1회				7,500원	마. 갑상선기능검사 (T3, FT4, TSH)			1회	15,000원	무료대상자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마. 구빈건강검진	1회	7,50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별표 비고 무료대상자를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급 장애인도 무료대상자에 포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일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3. 미첨부 사유

가. 무료대상자가 확대에 따른 예상비용이 160만원 미만으로 추정됨

- 현재 총 4가지 검사(골밀도검사, 암표지자검사, 갑상선기능검사, 구민건강검진)는 '1·2급 장애인' 무료
- 2019년 7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수수료 면제 대상인 '1,2종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기존3급 장애인도 포함
- 2019년도 전체 무료대상자 중 보건소 검사율은 1% 정도로 기존3급대상자 추가 시 해당 인원 20명 내외, 소요비용 30만원 미만으로 추정
- 'A형검사' 무료시행시 검사율을 1% 정도로 예측 시 해당 검사인원은 80명 정도로 소요비용 128만원으로 추정

※ 2019. 5. 30. 기준 3급 장애인 인원 : 2,091명

- 2019년도 마포구 보건소 무료 검사자 현황

구 분	무료검사인원(명)	감면액(천원)	비고
합 계	90	939	무료대상자전체 : 7,640명 - 1·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 4,723명 - 1·2급 장애인 : 2,917명
골밀도검사	30	180	
암표지자검사	21	294	
갑상선기능검사	23	345	
구민건강검진	16	120	

※ 일반 병원에서도 무료검사가 가능하므로 보건소 검사율이 극히 낮음

4. 작성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이기연 (☎ 3153-9012)